

대통령령 제 호

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2차관”을 “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
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준비기획단의 구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(이하 “준비기획단”이라 한다)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,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<u>제2차관</u> 으로 한다.	제6조(준비기획단의 구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</u> <u>장관이 임명하는 사람</u> ---.